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기본차령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기본차령 조정 관련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고성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서류에 따라 적법 여부를 확인 후 연장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부칙 안 제1조 ~ 제2조) 시행일 및 차령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2023. 3. 21.)이후 조례 제정시기 기간 중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의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차령 연장에 따라 승객의 안전보호 측면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장시 대상차량의 엄격한 기준마련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 대책 등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